

무형유산의 보호와 NGO의 역할

김광희

한국문화재단 국제교류팀장

무형유산 보호의 의의

무형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 없이 재창조해 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 표현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살아 있는 문화다. 이러한 연유로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한편에는 세계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형유산은 전승 능력의 상실이나 잔존문화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유산에 새로운 생명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¹

무형유산은 삶의 예지이자 지혜의 결정체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무형유산은 우리 현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슷한 환경이라면 미래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유형문화를 만들어 내는 정신 자산인 무형유산의 전승

¹ 김광희, 「한국의 무형유산 보전과 활용」(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 1 참조.

이 중요한 까닭이다. 지난날의 삶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생활에 지혜로 활용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가치가 곧 무형유산인 것이다. 무형유산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가치관, 사회의식, 세계관, 우주관 등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문화를 통해 현대인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² 이러한 것들이 무형유산을 보호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형유산의 특성과 보호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 개념이 약간씩 다르지만 인류유산으로서 무형유산은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³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NGO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호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무형유산의 특성으로 고유성(固有性)을 들 수 있다. 고유성이란 무형유산의 독특하고 유일한 특성을 말한다. 무형유산은 예술이나 문화의 표현 형식으로 존재하여 특정 민족이나 국가 또는 지역 거주민들의 독특한 창조력을 체현하거나 물질의 성과, 구체화한 행위 방식, 예의, 습속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각 민족이나 국가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구비하고 있다.

두 번째 무형유산은 민족성(民族性)을 담고 있다. 민족성은 한 민족의 무형유산이 그 민족 특유의 사유방식, 지혜, 세계관, 가치관, 심미관, 정감 등을 표현하고 있어 타 민족이 이를 흉내 내거나 모방할 수 없는 특징을 띤다. 민족의 복식, 음식, 생활방식, 언어, 풍속 등은 모두 자연 발생으로 형성된 것이다. 대체로 그 민족이 거주하는 자연 생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다.

세 번째 무형유산에는 역사성(歷史性)이 있다. 역사성은 무형유산이 결코 어느 특정 시기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형유산은 역사의 장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이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에 관한 각종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전승 과정에서 역대 전승자의 지혜, 기예, 창조력이 누적됨으로써 민족의 지혜 결정체가 된다. 무형유산은 그 자체가 풍부한 역사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과 동시에 특정한 전승자들의 사유, 정감, 가치관 등도 함께 반영되는 것이다.

네 번째 무형유산은 전승성(傳承性)을 보인다. 전승성이란 무형유산이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지속해서 보전되어야만 전승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리킨다. 전승 활동이 중지되었다면 이는 사망을 의미한다. 무형유산은 통상 구두교육(口傳心授)이나 전수 등의 방식으로 기능, 기예, 기교 등이 전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데 바로 이러한 전승성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 번째 무형유산은 변이성(變異性)을 띤다. 변이성이란 무형유산이 계승됨과 동시에 변이가 일어나면서 원형과 차이가 발생하는 특성을 말한다. 무형유산은 전수자와 학습자의 의식 교수와 학습활동이 존재하거나 민간 스스로의 상호학습과 같은 문화 교류 방식을 통해서만 다른 민족이나 국가 또는 지역에 전파된다. 무형유산의 전파는 계승됨과 동시에 변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전승 과정에서 원형과는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여섯 번째 무형유산은 지역성(地域性)을 내포한다. 지역성이란 무형유산의 특징이 지역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민족은 대체로 자신의 특정한 생활과 생활 영역을 영위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 환경은 민족의 특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 문화의 특징은 대체로 지역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통상 무형유산은 모두가 일정한 지역에서 생성된 것으로, 그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일곱 번째 무형유산에는 집체성(集體性)이 있다. 집체성이란 무형유산이 전승자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집단의 지혜와 창조 산물이라는 특성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전승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전승자 개인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체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보면 무형유산은 전승자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집단의 지혜 및 창조로 인한 산물이다.

여덟 번째 무형유산은 활성(活性) 개념이다. 활성이란 무형유산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는 특성을 말한다. 무형유산은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활동하는 동태 개념이며, 정신 요소를 중시한다. 무형유산의 표현과 전승은 모두가 동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특성으로 무형유산은 종합성(綜合性)을 지닌다. 무형유산은 일정한 시대와 자연, 환경, 문화 등을 종합하는 정신의 산물이다. 무형유산의 종합성을 구성 요소 측면에서 말하면 다양각색의 표현 형식이 종합되어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무형유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희곡에는 문학, 무용, 음악, 교육, 미술 등 각종 표현 방식이 망라되어 나타난다. 또한 기능 측면에서 보면 오락과 향유, 감상과 교

2 김광희, 앞의 논문, p. 37 참조.

3 李世濤, 「試析“非物質文化遺產”的基本特點與性質」, 『廣西民族研究』3(2007), p.p. 184~187. 周小岩, 「“非遺”保護的“活態性”轉承」, 『語文學刊』11(2011), p.p. 112~113.

육 등 종합 기능이 있다.⁴

NGO 보호 활동은 이상과 같은 무형유산의 9가지 특성을 살펴 실현해야 할 것이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NGO

협약 당사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무형유산 발굴과 정의에 NGO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권고된다. 이는 NGO들이 유산 공동체와 가장 직접 소통하기 때문이다.⁵ 국제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 협약의 인가 NGO들을 통해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178개 기관이 인가 NGO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의 인가 NGO로는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세계무술연맹, 세계탈문화예술연맹,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있다.

당초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는 6명의 인가 NGO 대표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를 1년 임기(재임 가능)로 구성하여 긴급보호목록 등재 심사, 모범사례 제안서 심사, 미화 2만 5,000달러 이상의 국제원조 신청 심사 등을 위임하고 있었다. 또한 자문 기구는 심사 후 등재 또는 허가 등과 관련된 권고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무형유산협약 5차 총회(2014. 6. 2~5)에서 모든 등재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기구(Evaluation Body)를 설치해 기존의 심사보조기구(SB), 심사자문기구(CB)의 역할을 통합하고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⁶

NGO의 승인 기준은 (a)하나 이상의 특정 지역에 속한 무형유산 보호에 관해 자질과 전문 지식 및 경험을 인정받은 NGO, (b)적합한 지방·국가·지역 또는 국제 성향을 띠고 있는 NGO, (c)유네스코 협약 정신과 다른 목적에 맞는 법규 및 법에 따르는 목적을 두고 있는 NGO, (d)무형유산을 만들고 실행하며 전수하는 지역 사회나 단체 또는 적절한 경우 무형문화재를 창조하고 실행하며 전승하는 개인의 참여를 권고한다.⁷

4 김광희, 앞의 논문, p.34.

5 NGO의 참여는 2003년 유네스코 협약 11조 b항에 따라 회원국은 협약(운영지침 90) 실행에 포함된 다른 대상과 협력하면서 협약 실행, 그 가운데에서도 무형유산을 확인하고 정의하는 한편 기타 보호 방법을 시행할 때 관련 NGO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총 12명은 정부간위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임명한 전문가(6명), 비정부기구(NGO) 대표(6명)로 구성된다.

7 운영지침 91.

무형유산위원회는 NGO 및 기타 기관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권고하고 있다. (a)무형유산에 관한 인식 제고, (b)무형유산의 확인 및 정의, (c)목록 정리, (d)보호, (e)연구, (f)추천 정보 준비, (g)협동 및 네트워킹, (h) 무형유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⁸

NGO는 회원국과 유네스코의 요청에 부응하며, 말은 의무 및 자체 능력에 따라 지역 사회와 함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하고, 업데이트와 관리를 정기 실시해야 한다.

목록 작성은 관할 기관, 공공 기관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지역 사회, 단체, 개인 및 관련 NGO가 참여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사회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간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 작성이 소수의 무형유산을 무시하거나 다양한 표현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한다면 사회 및 문화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회원국은 무형유산 목록 작성 업무를 자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엇이 무형유산의 자질에 부합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우리는 무형유산의 정의에 대해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 사회 내의 무형유산인지 여부는 지역 사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무형유산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NGO의 역할과 함께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NGO는 지역 사회, 단체 내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무형유산의 목록 확인은 물론 이에 대한 연구와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함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의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하는 등 전승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

NGO는 무형유산 요소에 관한 연구에도 참여해야 한다. 관련 역사와 의미, 무형유산의 사회·문화·경제성 역할, 무형유산의 전승 실태 등을 연구하여 무형유산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한편 무형유산의 현대 의미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을 NGO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나누는 일도 해야 한다. 연구 성과는 물론 확인, 정의, 기록 등 업무를 잘 수행한 기타 NGO와의 협력 및 네트워킹으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무형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용한 본보기를 제공하는 한편

8 운영지침 90.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고 선별하여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에 관한 추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NGO는 무형유산의 관리 및 보호 관련 교육이 필요할 때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 및 무형유산 전승자들에게 무형유산 요소의 기록과 보호 및 자료 도구를 활용하는 적절한 방법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NGO의 활동 사례

이 글에서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무형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NGO 활동 위주로 기술하도록 한다.

1. 무형유산의 진흥 활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무형유산 지원 및 향유 계층 확대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지원 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 강습사업, 기예능 기획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승자들의 국내외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무형문화재는 문화 소외 지역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2012년의 경우 246건을 지원하였으며, 전승 종목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취약 종목의 지원 횟수에 차등을 두었다.

재단은 무형유산 보급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 강습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전수교육관 입주 단체장 및 보유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형문화재 무료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활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115건을 지원하는 등 전승자들의 활동 범위 확대, 일반인의 문화향유권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⁹

재단은 무형유산 전시의 활성화, 공예품 보급 확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주력하고 있다.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교육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50종목의 기능보유자 작품 전시와 함께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

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만 7,026명의 관람객이 교육관에 다녀갔다. 또 무형문화재를 체험하는 '학교너머 전통문화교실'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전수자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30회 운영하였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로 초등 교과서를 분석하여 교과서 속 무형유산을 새로운 방법으로 배워 보는 '교과서 속 무형유산'을 37회 운영하였다. 2013년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는 3,298명이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만족' 응답이 90% 이상이 되는 등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무형유산 공예 종목 대중화 계획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재초대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무형문화재 기획전 등이 매년 추진되고 있다.

무형유산 예능 분야에서는 경연대회를 개최, 신진 예능인을 육성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승 활동을 장려, 무형문화재 활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이다. 2013년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에는 총 110팀, 516명이 참가하였다. 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 또한 매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의 경우 14개 대학이 참가하였다.

재단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상설 공연, 대를 잇는 예술혼, 굿보러가자, 한국문화의집(KOUS) 상설기획 공연 등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으로 무형유산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굿보러가자'는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3년에는 5-11월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연은 전북 군산, 경북 성주, 부산, 충북 충주,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충남 서천, 경기 포천에서 총 7,562명이 관람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 무형유산 대중교육 활동

한국문화의집(KOUS)에서 운영하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확대를 위해 무형유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전통공예기법을 익히고 전통 공예의 보급 및 확산과 함께 신진 공예인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1년 과정의 전통공예 실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14개 분야 58개 반이 개설되었으며, 모두 657명이 수강하였다. 또한 추가로 개설된 전통공예 디자인 강좌, 교원 문화유산 직무연수, 문화재수리 기술 강좌 등은 무형유산 교육 확대 역할을 하고 있다.

3. 무형유산 국제 네트워킹 활동

재단은 무형유산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를 위해 영문뉴스레터(ICH NGOs NEWSLETTER)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형유산을 홍보하는 한편 전승자와 국제

⁹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연보』, p.21.

기구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의 역할 정립과 협력 방안'(2011년), '무형유산 진흥에 관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의 역할'(2012년), '김치와 김장문화'(2013년) 등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개최로 무형유산의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들 심포지엄에는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이집트, 인도, 불가리아, 몽골, 필리핀,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2013년에는 '김치와 김장문화'라는 국영문 도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재단은 무형유산 NGO 전문가들과의 협력 교류 심화를 위해 무형유산 기획 전문가를 매년 초청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 무형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사업의 비결 공유 확산으로 인류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에는 인도·불가리아·몽골, 2013년에는 케냐·불가리아·콜롬비아의 무형유산 관련 연구자들과 교류했다. 현재까지 연구자는 총 11개국 21명이 참여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NGO의 역할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NGO의 역할이 필수다. 그 역할은 무형유산에 관한 인식 제고를 비롯해 무형유산의 확인 및 정의, 목록 정리, 보호, 연구, 추천 정보 준비, 협동 및 네트워킹,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 등이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들 역할을 토대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NGO로서 실천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 번째로 무형유산 인벤토리(Inventory) 작성 활성화다. 지정 무형유산은 물론 지정을 받지 못한 무형유산까지도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정리하여 연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전승 주체, 전승 지역, 전승 내용, 유래와 역사를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인가된 무형유산 NGO 기관 내 무형유산 지원센터 설립이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평균 연령은 전승활성화 종목을 제외하고 평균 60세가 넘는다. 한국 무형유산 지원 온라인 행정시스템¹⁰을 고령인 보유자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전승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형유

산 지원센터에서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전승자들의 복지와 창업 등의 컨설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NGO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의 사후 관리 역할 담당이다. 한국에서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을 등재시키는 12월 첫째 주가 되면 올림픽에 출전한 피겨 스타 김연아를 떠올리게 한다. 2012년 한국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그랬고 2013년 김치 담그기 '김장문화' 또한 마찬가지였다.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16개가 등재될 때마다 그 순간이 축제였다. 그러나 등재되고 나면 그만이다. 따라서 등재된 이후의 무형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리랑 세계화 추진단'(가칭)을 조직하여 공연, 전시, 연구, 심포지엄, 아카이브, 국제교류 등 사업 추진이다. 이와 같이 등재된 인류무형유산의 보호와 세계화에도 NGO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현재 178개 유네스코 무형유산 NGO 간 적극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다. 교류 방법은 공연, 전시, 축제 협력,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 사례의 경험을 공유하여 각국 무형유산의 공동 보호와 진흥을 꾀해야 한다. NGO 간 교류로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및 총회에서 NGO의 위상을 높이고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NGO들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의 활동 적극 참여다. 모든 등재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기구(Evaluation Body)에 참여하는 NGO는 물론 유네스코 인가NGO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NGO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이를 운영하고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및 긴급보호목록 심사 등에 자진해서 참여해야 한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자 사고방식이며 명확히 하면 예술작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에 깃들여 있는 정신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창작품을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무형유산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와 단체는 물론 관련자 모두의 역량을 모아 문화 부문의 명예를 존중하는 표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국가 문화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NGO는 이러한 원천을 지켜 나가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¹⁰ 문화재 협업 포털에 연간 교육 일정 및 결과 등록, 기획공연, 공개행사,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등의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모두 합치면 10가지가 넘는다.